

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 
교육지원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2015.06.18.(목)

교육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윤 홍 창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15년 06월 01일

다. 회부일자: 2015년 06월 02일

라. 상정일자: 2015년 06월 10일

(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윤홍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충청북도 청소년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강화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1)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·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.(안 제3조)
- 2) 3년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.(안 제4조)
- 3) 지원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.(안 제5조)
- 4)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지원을 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.  
(안 제6조, 안 제7조)
- 5)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.  
(안 제8조, 안 제9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: 반기환)

-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·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하여,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행하도록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추진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지원을 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였음.
- 우리나라는 매년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약 6만~7만명이나 되고 우리 충청도 매년 평균 약 1,600명 정도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실정임. 2014년에도 도내 1,626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으며, 이 가운데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초등학생 38명, 중학생 241명, 고등학생 606명이나 됨.
- 학업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학업중단 예방정책과 교육활동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, 또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교복귀나 다양한 대안 교육환경을 제공 하는 등과 같은 교육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, 이번 조례 제정은 학업중단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실현을 촉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과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 음”

9. 첨부서류: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

##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학업중단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 - 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
  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
3. “학교 밖 청소년”이란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4. “대안교육”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,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·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.
5. “대안교육기관”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과 미인가 기관 모두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추진방향과 목표
2.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
3.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시행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라 해마다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장기결석 학생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
2.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교육, 학생·학부모 상담, 숙려제 운영강화
3.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등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운영·지원
4.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·단체와의 협력·지원체계 구축
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재정지원) ① 교육감은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초·중·고등학교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원에 대한 지도·감독) ①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
1.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2.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한 경우
3.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

제8조(위탁)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충청북도, 충청북도지방경찰청, 청소년육성단체, 대안교육기관 등과 「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실무협의회」를 구성·운영하여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 법령 발췌

### □ 초·중등 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·공민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제4조(학교의 설립 등)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·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교육감 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사립학교를 설립·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제18조(학생의 징계)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. 다만,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.

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## 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학교 밖 청소년 이란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
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
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
## □ 청소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“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할 수 있다.



# 비용 추계서

## 1. 비용추계내용

### ○ 재정수반요인

-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제5조, 제7조, 8조, 9조에 따른 예산 추계

## 2. 비용추계

-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이 시행되면 416,82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(매년 확대 예정)

구분 \ 연도	2015년도	2016년도	2017년도	2018년도	2019년도
학업중단 숙려제 운영	213,000천원	288,000천원	288,000천원	288,000천원	288,000천원
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교 운영	150,000천원	200,000천원	250,000천원	300,000천원	350,000천원
대안교육위탁 교육기관	49,000천원	50,000천원	60,000천원	70,000천원	80,000천원
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 청 소년 교육지원 실무 협의회	4,820천원	6,320천원	7,820천원	9,320천원	10,820천원
합 계	416,820천원	544,320천원	605,820천원	667,320천원	728,820천원

## 3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○ 기초자료 및 세부내역

- 학업중단숙려제 운영(도내 모든 고등학교 지원 및 중학교까지 지원비 확대 예정) : 213,000천원
  - 1,000천원×15교=15,000천원, 3000천원×66교=198,000천원

- 학업중단예방집중지원교 운영(15교운영): 150,000천원
  - 10,000천원×15교=150,000천원
- 대안교육 위탁교육 운영(5기관 지정에서 점차 확대운영): 49,000천원
  - 10,000천원×4기관=40,000천원, 9,000천원×1기관=9,000천원
-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실무 협의회 운영
  - 위원회 참석수당(2,500천원) : 70천원×5명×5회=1750천원, 30천원×5명×5회=750천원
  -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컨설팅 및 업무추진비(4,820천원): 150천원×10명×3회=4500천원, 16천원×10명×2회=320천원

4. 작성자 : 진로인성교육과 인턴장학사 박경원(290-2285)